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여성가족과)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405호
----------	------

제출년월일 : 2021. 11.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중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위탁 계약 해지를 요청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체 변경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 위탁 대상 시설

연번	시설명(원장)	소재지(행정동)	현 위탁체	현 위탁기간	정원/현원
1	온터어린이집 (오정화)	솔샘로5길 92 (정릉3동)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2019.01.01. ~ 2023.12.31.	79/61

※ 기존 위탁체의 운영상 사정으로 위탁기간 만료 전 변경위탁 진행

나. 위탁기간 : 2022.03.01. ~ 2027.02.28.(예정)

다.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선정
(2022.02.예정)

라. 위탁 사업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관련근거

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